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3. 12.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1년 8월 17일, 박대수의원 등 10인

나. 회 부 일 자: 2021년 8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2.5.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3.7.26.) 상정,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23.7.26.)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대수의원)

1) 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위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변경보고를 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또한,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의무 위반의 실질에 부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더 충실한 규제 체계를 구현하고 상·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래에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변경보고를 법률에 규정함(안 제48조제3항).

나.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56조제1항제2호).

다.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시 배출가스량 증가 없는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중요사항 외의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안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2).

라. 현행법 제91조제4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로 규정하므로, 변경보고 제도를 제48조제2항의 변경인증과 별도로 제48조제3항으로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고상근)

1)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변경보고 신설

자동차제작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제작차에 대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¹⁾에 부합한다는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²⁾는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중

1)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인증의 변경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배기량
2. 캠축타이밍, 점화타이밍 및 분사타이밍
3. 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감속비, 공차 중량(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촉매장치의 성분, 함량, 부착 위치 및 용량
5. 증발가스 관련 연료탱크의 재질 및 제어장치
6. 최대출력 또는 최대출력 시 회전수
7. 흡배기밸브 또는 포트의 위치
8.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

②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차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 제원(諸元)명세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배출가스 변화에 대한 검토서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요한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³⁾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법 제 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 증가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대해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에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인증 의무를 변경보고 의무로 완화하고 있어서 법체계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⁴⁾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서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보고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변경인증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개정안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가스 인증에 대한 변경내용 보고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와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법령 체계상의 논란을 해소하

3) 수입자동차인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4)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 증가가 없는 경우’에 변경보고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배출가스의 양이 증가하지 않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단지 변경보고만으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 절차를 완화해 준 것으로 변경인증 의무와 별도로 시행규칙에 의해 새로 창설된 의무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하였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 선고 2018고단155 판결, 대법원 2019.9.9. 선고 2019도6588판결, 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도6252 판결 등), 해당 사건들에서 피고인들은 “변경보고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비로소 창설된 것에 불과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변경인증의무 위반에 관한 처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음.

려는 것으로 법적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구체적인 규정 방식은 변경인증과 변경보고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봄.

2) 거짓 변경보고 등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배출가스 증가가 없는 중요사항 변경보고’ 또는 ‘중요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제4호5)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 제5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됨.

그러나 ‘배출가스 증가가 없는 변경’이거나 ‘중요한 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것과 동일한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하는 것은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개정안은 변경인증,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 중 배출가스 증가가 없

5)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는 변경 보고, 중요한 사항 이외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행위를 구분하고, 각 위반행위의 정도에 비례하는 제재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는 해당 의무의 입법 목적 및 보호범익에 따라 달리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함. 다만, 의무 위반시 부과되는 제재가 각 의무위반 행위에 비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 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타사항

없 음